

# 교육훈련 위탁계약서

※ 상호협력 교육지원의 경우에 본 훈련기관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계약의 “갑(교육참가 회사)”과 “을(대한건설협회)”은 다음과 같이 교육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계약의 범위)

교육과정명				훈련일수		
교육기간		2010 . . . ~ 2010 . . .		훈련시간		
계산서발행	회사명(교육비지원업체)			대표자		
	사업장주소			업태		
	사업자등록번호			종목		
	상호협력교육지원여부	상호협력 지원교육 <input type="checkbox"/> 상호협력 비지원교육 <input type="checkbox"/>				
종업원수	명	회원사 구분	회원사 <input type="checkbox"/>	비회원사 <input type="checkbox"/>		
		교육비(1인)				
훈련생입력사항	구분	1인	2인	3인		
	훈련생회사명					
	교육참가자성명					
	주민등록번호					
	부서 / 직위					
	휴대전화번호					
	회사전화번호					
	E - M a i l					
귀사담당	교육담당자성명		교육담당자 부서		교육담당자 직위	
	귀사전화번호		E-Mail			
	교육비합계	원	송금예정은행	은행	송금예정일	2010년 월 일
			교육비입금은행	외환은행	예금주	143-13-08778-7

제2조 (계약기간)

계약기간은 “갑”이 “을”에게 교육훈련비를 입금한 날부터 “을”이 위탁훈련을 마치고 계산서 및 이수증을 발급 수강생에게 전달한 시점까지로 한다. 다만, 계속하여 교육과정이 남아있을 시는 교육훈련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.

제3조 (교육비 납부 및 환불)

- ① “갑”은 교육비를 각 과정별로 교육 1주일 전까지 온라인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산서 발급은 교육이수 마지막 날로 한다. 다만, 특정과정에서 위탁훈련생 정원 초과 등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동 과정에 대한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며, 교육비를 “갑”에게 환불한다.
- ② “갑”이 납입한 교육비를 환불 또는 교육대상자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개시 3일전 까지 “을”에게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4조 (수료)

“갑”이 위탁한 교육생은 해당 교육시간의 80%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, 이 경우 “을”은 이수자에 대해 이수증 발급함으로써 교육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본다.

제5조 (성실의무)

- ①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훈련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② 허위·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등 을의 귀책사유로 인정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해 당해 훈련과정이 취소되어 갑이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훈련비용을 지원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을이 책임을 진다.

제6조 (해석 및 합의)

본 계약서상에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한 바에 따른다.

2010 년 월 일

“갑”(상호협력지원의 경우 교육비 지원업체)

“을”

회사명 :

회사명 : 대한건설협회

대표자 : 권 홍 사 (인)

대표자 :

(인)

주 소 :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-2

전 화 : (02)3485-8254 FAX : (02)3445-7363

(교육담당자 인적자원개발팀)

